

창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113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113728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9. 8 선고 2021가단41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신

변론종결 2024. 6. 14.

판결선고 2024. 7. 2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9. 8. 선고 2021가단41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3. 23.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47,857,5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857,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채권은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C의 G은행 예금채권 430,000,000원은 H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이 2021. 9. 8.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아 변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C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C의 F공제조합에 대한 1,313,634,521원의 하자보수보증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가 현실화 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이진석, 판사 김상욱

별지